

## VII. 시사점<sup>99)</sup>

### 1. 요약

현재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어 녹색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이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업권별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환경적 유인체계를 연계하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틈새상품으로서 녹색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녹색금융의 목표는 고객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할 때 기존의 생활스타일·사업스타일을 급격히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상품설계·마케팅전략·위험관리 측면의 혁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현재 녹색금융의 활용은 업권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먼저, 은행의 경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서 환경요인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환경관련 유인체계를 대출과 연계함으로써 고객이 자원을 사용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요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조건이 달라지면 주택구조·밀집정도·교통량·쓰레기처리시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은행의 경우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참여, 환경요인에 연계된 금융투자상품 설계, 유가증권 인수 시 환경요인 연계 등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투자은행은 유동화기법<sup>100)</sup>을 활용하여 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자금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개발로부터 생성되는 불안정한 수익흐름을 금융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환경요인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 후 녹색금융 연계

---

99) 진 익,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 연구위원(realwing@kiri.or.kr)

100) Eco-Securitization 기법이라고 불린다.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거나, CDM-프로젝트·JI-프로젝트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거나, 스스로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환경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즉 청정기술이나 탄소배출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녹색-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녹색-펀드는 녹색-사업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다. 표준화된 녹색-펀드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다.<sup>101)</sup>

마지막으로, 보험에서도 녹색금융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환경요인이 부분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하는 상품, LEED-인증 건물에 대한 보장제공, 탄소 중립적인 건물·자동차 관련 보험, 환경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장제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으로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CDM-프로젝트 관련 이행보증 제공,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위험 관련 보증 제공 등이 활용되고 있다.

## 2.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가격결정원리, 배출권 금융시장 현황, 녹색보험상품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존재하여 배출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될 때 배출권 거래제도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녹색금융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회사는 어떤 고객이 환경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 이해요구를

101) 녹색-펀드와 자산관리서비스가 연계된 사례로는 UBS(Lux) Equity Fund - Eco Performance와 UBS(Lux) Equity Fund - Future Energy가 대표적이다. ICF Consulting(2007) 참조

갖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평가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이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과 연계된 금융상품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녹색금융이 틈새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고객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녹색금융 활성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녹색금융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장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 제고, 녹색-에너지시장 확산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녹색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확대시켜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인 금융회사가 기후변화를 자신들이 직면한 큰 환경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의 전례를 보면, 녹색금융에서의 성공은 다양한 금융활동과 환경요인의 연계가능성을 식별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녹색금융이 투자기회·위험관리 차원에서 기업·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장위험·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운영위험·법적위험(compliance risk)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 금융선진국의 선도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미 환경요인과 관련된 운영위험·법적위험에 대해 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해 가고 있다.

셋째, 국내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가지 역할은 환경 관련 규제의 도입이다. 예정대로 탄소배출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회사도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녹색-PF 관련 거래의 중개나 보증제공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역할은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원<sup>102)</sup>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 정책이 녹색-펀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국내에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

102) 대표적인 예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production tax credits 등이다.

된다. 녹색금융 시 탄소배출량 산정·측정·공시에 대해 모범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금융회사가 CDM-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해당 투자 관련 위험관리를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문별 여신규정에 환경요인 관련 기준 연계, 환경요인 관련 신용위험·운영위험·법적위험·평판위험 관리기법 확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국내에서도 녹색금융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보험상품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변화로 인한 재산손실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바,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해 CGL(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를 통한 보장제공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출량 감축에 실패한 경우 공공단체나 시민들로부터 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바, 배상 의무에 대해 E&O-보험(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을 통해 보장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업 이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해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통한 보장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녹색보험상품의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녹색기업 자금지원, 즉 CDM-프로젝트와 관련한 녹색보험으로서 사후적재무손실 관련 보험과 배출권인도보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차입자(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이행보증보험과 더불어 투자자(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신용보험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탄소시장 관련 녹색보험으로서 탄소배출권 투자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일정 한도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융보험의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신용보험·금융보험이 활성화되면 투자자·금융회사가 관련 위험(신용·시장·유동성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져 탄소시장·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